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4. 27 선고 2021가단1125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

담당변호사 김동길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3. 30.

판 결 선 고 2022. 4. 27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9,869,948원과 그 중 19,869,870원에 대하여 2021. 6. 29.부터 2021. 11. 3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. 1. 5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1. 1. 8. 접수 제41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나. 피고 B : 민사소송법
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채대원

별지